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98
----------	------

발의연월일 : 2018. 9. 21.
 발 의 의 원 : 김태원 의원
 김병태 의원
 김성태 의원
 이시복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년층, 인생이모작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교육 및 상담 등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바.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노후준비지원법」 제3조)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대상의 확대)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
2. 사회공헌활동 지원
3. 문화·여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생 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년층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3. 그 밖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65호, 2015. 6. 22, 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7.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①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노후준비지표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 노후준비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2.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장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5.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평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역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장이 지역센터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⑦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절차, 평가방법, 폐지·휴지·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